

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(제16조제1항 관련)

1. 교육과정,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

교육과정	교육대상자	교육시기
가. 신규교육	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	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
나. 보수교육	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	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
다. 등급조정교육	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위해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	등급조정 신청 시

2. 교육과목

가.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I

- 1) 기계설비 일반
- 2) 기계설비 운영계획
- 3)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
- 4) 기계설비 관련 법령

나.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II

- 1)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
- 2) 공기조화·공기청정·환기설비
- 3) 위생기구·급수·급탕·오배수·통기설비
- 4) 자동제어설비
- 5) 그 밖의 설비

3. 그 밖의 사항

가.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최초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때에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나.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,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

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다. 제1호다목의 등급조정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에 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라.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,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.